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
(제2차 교육위원회)  
2021. 6. 11.(금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수완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5월 31일
- 회부일자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내 학교 건축물의 내·외장재로 사용된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적용범위(안 제4조)
-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(안 제5조)
- 실태조사(안 제6조)
-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(안 제7조)
- 공사에 따른 조치(안 제8조)
-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(안 제9조)
- 시행규칙(안 제10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공립유치원 및 공·사립 각급학교로 정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, 안 제6조에서는 석면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임무에 대하여 정하였고, 안 제8조에서는 석면공사 시 학교장이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9조에서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석면해체·제거 작업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고, 안 제10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의 제정은 충청북도 내 학교 건축물의 내·외장재로 사용된 석면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